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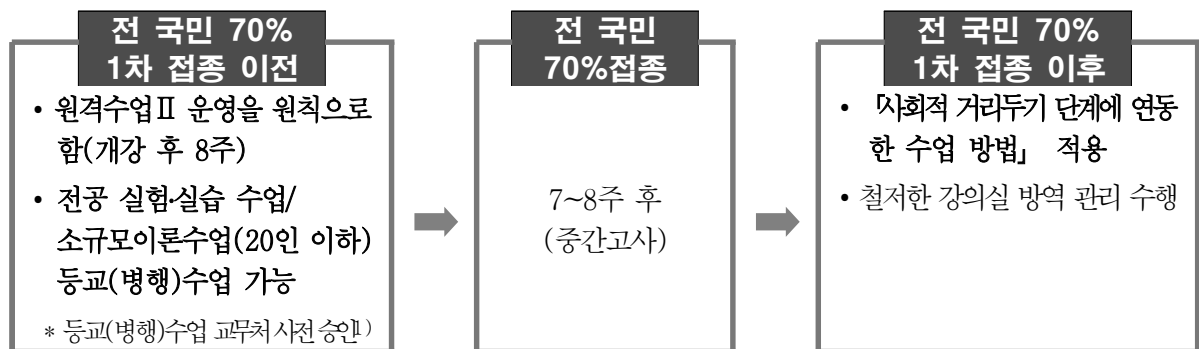
2021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방안

(2021.8 / 대학원)

가. 기본방향

1) 방역 등 안전을 고려해 전 국민 70%의 백신 1차 접종 완료 시기(2021.9~10월 예상)를 기점으로 학내 등교수업 확대('21-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('21.6.24), 교육부)

- ▶ 개강 첫주(8.30~9.3) : 전면 온라인 수업 진행
- ▶ 개강 후 2~8주(9.6~10.22) : 원격수업 II 원칙
(단, 2021-2학기 개강주(8.30~9.3) 전면 온라인 수업 진행)
- ▶ 개강 후 9주 이후(10.25이후) :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동 수업



2) 철저한 강의실 방역 관리 수행(대학 코로나19 방역 지침('21.7월, 교육부)에 근거)
[거리두기 단계 연동 강의실 방역 관리 지침(안)] (교육부)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좌석 있는 강의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좌석 한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좌석 두 칸 띄우기 	
좌석 없는 강의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 면적 4㎡ 당 1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 면적 6㎡ 당 1명 		
음악 계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노래 부르기,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			

1) 등교(병행수업 사전승인 절차 및 승인 요건 / 대면수업신청서 작성 / 수강생 동의 필수)

- 개요 : 전공 실험실습 수업 및 소규모(20명 이하) 수업 중 병행수업이 필요한 수업의 사전승인 절차 및 요건
- 절차 : ① 신청서 제출(학과(부)장 경유) → ② 검토(교무처) → ③ 시행
- 승인요건

① 강의/실습실 수용인원 대비 50% 이하로 인원을 나눠 조별 순환수업 운영하는 경우

나.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연동한 수업 운영 방법(9주 이후~)

- 1)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하여, 2021-2학기 대면수업의 단계적 확대
 - 정부발표 「사회적 거리두기 단계」와 「수업 방법」을 연계
 - 본교 수도권 학생 비율 고려,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과 충남권역의 단계 중 높은 단계 적용
 - 「사회적 거리두기 단계」가 변경 될 경우 「수업 방법」은 변경 시점으로 부터 다음 월요일 적용

[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 방법]

단계	명칭/개념	수업 방법				
		교양		전공		
		이론	이론&실험실습	이론	이론&실험실습	실험실습
4단계	[대유행, 외출금지] 전국적 방역의료체계 한계 도달	원격수업Ⅱ	원격수업Ⅱ	원격수업Ⅱ	원격수업Ⅱ	원격수업Ⅱ
3단계	[권역유행, 모임금지] 권역대응 한계, 전국적 방역의료자원 동원필요	원격수업Ⅱ	원격수업Ⅱ	원격수업Ⅱ	원격수업Ⅱ	병행수업
2단계	[지역유행, 인원제한]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,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	원격수업Ⅱ	병행수업	병행수업 (20미만 강의 등교수업)	병행수업 (20미만 강의 등교수업)	병행수업 (20미만 강의 등교수업)
1단계	[지속적 억제상태 유지]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 여력 이하 환자 발생	원격수업Ⅱ	등교수업	등교수업	등교수업	등교수업

[용어의 정의]

- ▶ 원격수업Ⅱ: 재난상황 등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어려운 경우 운영하는 원격수업
(참고: 원격수업Ⅰ: 기존의 원격수업(사이버강의))
- ▶ 병행수업: 등교수업과 원격수업Ⅱ를 동시에 진행(기본적으로는 등교하여 수업을 진행하나 학생들 중 재난이 발생하는 등 등교가 불가할 경우 녹화한 수업 자료를 제공), 강의 녹화 도우미 학생조교 지원
- ▶ 등교수업: 교수자 및 학생 전원 등교하여 배정된 강의실에서 수업 진행. 단, 수강학생 100%의 동의가 아닐 경우 병행수업으로 진행함(강의 녹화 도우미 학생조교 지원)

[교과목 예시]

- ▶ 교양(이론&실험실습): 퍼스널트레이닝과 바디세이핑(이론+실습), 탁구 이론과 실제(이론+실습) 등